อู่กาแอ่หงอบ - รูป-

의안번호 제100호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제 출 자	논 산 시 장
제출연월일	2022. 8. 19.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 안 번호 제100호

제출연월일: 2022. 8. 19. 제 출 자: 논 산 시 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원안가결, 2022. 3. 31.)하였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에서 규정하는 공유재산의 변경(취득) 사유가 발생하여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2년도 수시분1차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O 2022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안건 3건 중 1건 변경

연번	사 업 명	소관부서	비고
1	국공립 양촌어린이집(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아동복지돌봄과	변경 일반회계
2	양촌면 임화리 쌈지공원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산림공원과	일반회계
3	가야곡면 육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안전도로과	일반회계

O 2022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m², 천원)

일련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취득	치디기이	비고
번호	구분	소 재 지	면적	기군가격	시기	에 취득사표 	" "
		사업별개요 참조					

○ 2022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처분대상 재산목록

(단위:m², 천원)

재 산 표 시 일련				カスカカ	처분 시기	처분사유	비고
번호	구분	소 재 지	면적	기준가격 시기		시문사표	117
		해 당 없 음					

3. 2022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단위:m², 천원)

		당 2	초(202	22. 3. 31.)	변경			비고
구분	사 업 명	면적 면적 토지 건물 (동) 기준가격 토지 건물 (동) (동)		1 1-3	면적		1 - 1 - 1	
취득	3건	7,217	-	172,232	8,522	-	195,622	
	국공립 양촌어린이집 (이전) 신축사업 공유 재산 취득	1,988	-	80,339	3,293	-	103,729	변경
	양촌면 임화리 쌈지 공원 조성사업 공유 재산 취득	2,082	-	35,107	2,082	-	35,107	
	가야곡면 육곡리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공유 재산 취득	3,147	_	56,786	3,147	-	56,786	
처분	0건							
八工	해당없음							

4. 사업별 개요

□ 국공립 양촌어린이집(이전) 신축사업 공유재산 취득

■ 취득 개요

- O 사업목적 및 용도
 - 목적: 39년 이상 노후화된 국공립 양촌어린이집(이전) 신축 부지 확보
 - 용도: 국공립 양촌어린이집 신축 부지
- O 사업기간: 2022. ~ 2024.(4년간)
- O 취득위치: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9-1번지 (답)
- 취득면적: 3,293 m²
- O 취득위치 r 당초: 1,988m³ ⇒ 논산시 양촌면 인천리 78

L 변경: 3,293㎡ ⇒ 논산시 양촌면 도평리 9-1

- ※ 변경사유: 토지 소유자가 감정평가액 보다 높은 보상가 요구
- 소요예산: 2,335,600천원

(공모지원금 1,000,000천원, 시비 1,335,600천원)

(단위: m², 천원)

구분	총사업비	부지매입비	공사비	설계비	기타	비고
당초	2,405,600	350,000	1,944,000	111,600	-	부지매입비 감정평가분
변경	2,335,600	280,000	1,944,000	111,600	_	심성평가군 반영

- 사업규모: 대지면적 3,293㎡, 신축면적 462㎡
- O 계약방법: 협의에 의한 취득
- O 취득재산 대상내역
 - 변경 취득 대상: 토지

(단위: m², 천원)

		당 초(2022.	3. 31.)		변	경		
연번		재 산 표 시		コスコオ	재 산 표 /	시	カスカカ	비 고
	구분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소재지	면적	기준가격	
1	토지	양촌면 인천리 78	1,998	80,339	양촌면 도평리 9-1	3,293	103,729	토지변경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2022. 3. 7.: 제2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의결

○ 2022. 3. 31.: 2022년도 수시분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 2022. 7.: 변경 신축계획 수립

O 2022. 8. 8.: 공유재산심의회 변경(토지 취득)심의

○ 2022. 9.: 시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상정(안) 제출 및 의결

O 2022. 9.: 신축부지 취득 및 신축관련 협약 변경(3자 협약)

○ 2022. 9.: 설계용역 착수 (수행기관: 푸르니보육지원재단, 설계비지원 : 금융산업공익재단)

O 2023. 본예산: 시비부담분 1.055,600천원 예산 확보

O 2023.: 신축비 지원 및 신축

○ 2024.: 준공 및 기부채납

〈담당자 현황〉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비고
아동복지돌봄과장	김 화 수	746-5860	
보육지원팀장	임 수 경	746-5871	
담 당 자	최 지 혜	746-58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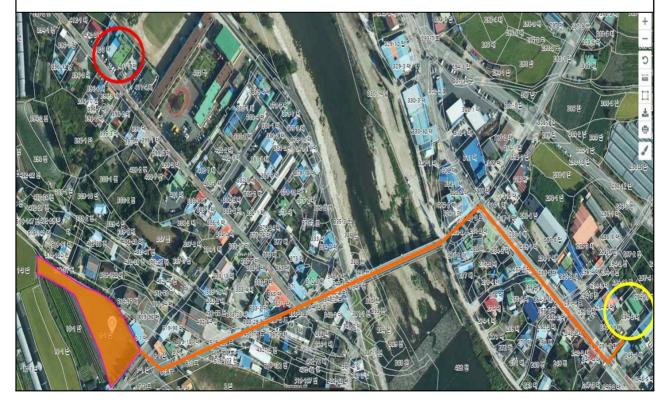
취득재산 현황(위치도 및 현장사진)

□ 위 치 도

당 초: 양촌면 인천리 78번지(지목: 답, 면적: 1,988㎡)



변 경: 양촌면 도평리 9-1번지(지목: 답, 면적: 3,293 m²)



□ 현장사진



관 련 법 규

□「지방자치법」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 2. 예산의 심의·확정
- 3. 결산의 승인
-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 5. 기금의 설치·운용
-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한다)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 · 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이 경우 기준 가격은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算定)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과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건물의 신축·중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 「논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